

##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2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3. 공고장소: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행위자	위치	대집행 대상	대집행 방법	미송달사유
연상희망마을영농 조합법인 대표조합원 김○수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70-1, 연상리 70-11	건물 내·외부 방치 집기류 (점유면적 438.64m <sup>2</sup> )	방치 물품 반출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가. 2024년 5월 9일까지 원상복구(집기류를 처리하여 치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033-370- 1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2024년 4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제2024-2호

##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성명(단체명): 연상희망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조합원 김○수 귀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영월로 3840-2

2024년 2월 22일 행정과-4062호로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건물 내.외부에 방치하여 무단점유 중인 귀하 소유의 각종 집기류에 대하여 2024년 3월 13일까지 원상복구(집기류를 처리하여 치움)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목적의 우량기업 유치 부지 확보를 위해 영월교육지원청과 영월군이 추진하는 공유재산 유상 교환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집기류를 처리하여 치움)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70-1, 70-11	건물 내.외부 방치 집기류 (장의자, 소파, 가구 등)	438.64m <sup>2</sup>	방치 물품에 대한 반출

2024년 2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